

강원지사 2024년 현장 실무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 기술 플랫폼 전문기업(Energy Technology Platform Provider)’ 비전 달성을 위해 함께 나아갈 우수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채용분야별 공고문과 채용직무 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3년 1월 3일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1. 채용내용

- 고용형태 : 기간제계약직
- 계약기간 : 2024년 2월 14일(수) ~ 2024년 8월 13일(화)
※ 6개월 근무 후 평가를 거쳐 연장 가능(최대 11개월 근무)
- 보 수 : 3,219,120원/월 (원천세, 4대보험 등 제세공과금 공제 전 금액)
※ 경영평가성과급 및 선택형 복리후생비는 내부 기준에 따라 지급
- 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시업시간 : 09:00, 종업시간 : 18:00, 휴게시간 : 12:00~13:00)
※ 필요시 시업 및 종업시간 조정 가능
※ 순환근무 형태로 운영될 수 있음
※ 근무시간 : 1일 8시간 근무(근무유형에 따라 08:00~17:00 등으로 적용될 수 있음)
※ 근 무 일 : 1주 5일 근무(근무유형에 따라 2일의 휴(무)일은 평일에 적용될 수 있음)
- 담당업무, 채용인원 및 근무지

분야	담당업무	채용인원	근무부서	근무지
기술	현장 정비지원 (경상정비 및 관로검사 보조업무)	3명	강원지사 본부	원주시 (사택 미제공)
		3명	강원지사 강릉사업소	강릉시 (사택 미제공)

주) 1.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및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정규직 전환대상이 아닙니다.

2. 채용관련 문의는 담당자(033-760-6813, mwchoi@kogas-tech.or.kr)로 연락 바랍니다.

기타사항

- 사택(합숙소) 미제공
- 인턴 수료자는 향후 공개경쟁 채용 필기전형 가점 5% 부여(계약종료 후 3년간 유효)
※ 단, 근무기간 6개월 이상이고 근무성적 평균이 “우” 이상인 자에 한함

2.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구 分	요 건
연령·성별	○ 제한없음
학력·전공	○ 제한없음
병 역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으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자 ※ 임용일 전까지 전역 가능한 자 포함
필수자격	○ (현장 정비지원)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소지자
기 타	○ 임용일부터 근무 가능자 ○ 우리 공사 인사규정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 지원불가 ○ 각 채용분야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확인시 불합격 처리) ○ 허위사실 등 기재자 발견시 합격 취소

3. 우대가점 사항

- (1차 서류전형) 가점 : 全 분야

구분	우대가점 사항												
공통 (I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 해당자(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개시일 기준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 ○ 주민등록상 해당 근무지 거주자(공고일 전일 기준)(15점) ※ 사택 미제공 ○ (공통) 컴퓨터활용 관련 자격증 소지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등급</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컴퓨터활용능력</td> <td>1급</td> <td>10</td> </tr> <tr> <td></td> <td>2급</td> <td>8</td> </tr> <tr> <td>워드프로세서</td> <td>단일등급(구1급)</td> <td>10</td> </tr> </tbody> </table> <p>※ 자격증별 최고등급 자격증 1개에 한하여 우대가점 적용(자격증별 중복적용 X), 최대 10점 만점</p>	구분	등급	점수	컴퓨터활용능력	1급	10		2급	8	워드프로세서	단일등급(구1급)	10
구분	등급	점수											
컴퓨터활용능력	1급	10											
	2급	8											
워드프로세서	단일등급(구1급)	10											
직무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이상 소지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등급</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공조냉동기계, 전기, 전기공사, 가스, 산업안전, 건설안전</td> <td>기사 이상 산업기사 기능사</td> <td>20 16 12</td> </tr> </tbody> </table> <p>※ 최대 3개까지 합산 (단, 동일 종목은 높은 점수의 자격증 1개만 인정) 최대 60점 만점 (예) 가스 산업기사, 가스기사 중복 보유시 가스 기사로 20점 부여</p>	구분	등급	점수	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공조냉동기계, 전기, 전기공사, 가스, 산업안전, 건설안전	기사 이상 산업기사 기능사	20 16 12						
구분	등급	점수											
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공조냉동기계, 전기, 전기공사, 가스, 산업안전, 건설안전	기사 이상 산업기사 기능사	20 16 12											
취업지원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취업보호 대상자 가점 부여 (만점의 10% 또는 5%) (동법 제31조에 따라 가점합격자 상한제 적용 : 채용인원 3명 이하인 경우 보훈대상자 가점 미적용.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국가유공자법 31조 3항에 따라 보훈 가점합격자의 비율을 선발예정인원의 30%이하로 제한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만점의 5%) 												

* 서류전형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보훈 및 장애인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보훈 및 장애인 2가지 모두 해당시 가점 중복 적용

- (2차 면접전형) 가점 : 全 분야

구분	가점사항
취업지원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취업보호 대상자 가점 부여 (만점의 10% 또는 5%) (동법 제31조에 따라 가점합격자 상한제 적용 : 채용인원 3명 이하인 경우 보훈대상자 가점 미적용.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국가유공자법 31조 3항에 따라 보훈 가점합격자의 비율을 선발예정인원의 30%이하로 제한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만점의 5%)

* 면접전형 원점수로 4할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하고 총점 6할 미만시 과락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가점 중복 적용

4. 전형절차 및 일정

□ 전형절차

- 1차(서류전형) :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선발, 입사지원서 및 우대요건 평가

채용분야	근무지	채용인원	합격인원	비고
기술	원주	3명	6명	2배수
	강릉	3명	6명	2배수

*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2차(면접전형) : 채용예정인원 선발, 직무수행능력, 관련분야 경험 등에 대한 질의 응답(인성 및 자질평가)

- 면접방법 : 인터뷰 방식 면접실시[직업기초능력(50%) 및 직무수행능력(50%) 평가]
 - * 직업기초능력 : 직업인으로서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능력
 - * 직무수행능력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및 발전 가능성 등 평가
- 과락 기준 : 총점 6할 미만(가점 포함)
- 최종합격자 결정 전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면접전형 참석자 전원에게 채용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서 징구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점수 6할 이상인 자 중 서류전형(30%), 면접전형(70%) 합산 고득점자 순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 중 가점 고득점자(국가보훈)
- (2순위) 장애인 등록자
- (3순위) 면접점수 중 직업기초능력점수 고득점자
- (4순위) 서류전형 고득점자(가점포함)

* 기준 모두 적용 후 동점일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소수점 처리 : 모든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전형일정

전형절차	기간 및 일시	내용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4.1.3.(수) ~ 2024.1.17.(수) ※ 15일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방법 : 채용사이트 접수 (https://kogastech.recruiter.co.kr) ※ 2024.01.17.(수) 15시까지 접수 완료분에 한함 ※ 우편 및 방문접수 받지 않으며 상용도메인을 통하여 지원서 접수시 스팸메일 처리되어 지원서가 반송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 바랍니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1.19.(금) 합격자발표일 : 1.23.(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d>구분</td> <td>본부(원주)</td> <td>강릉사업소</td> </tr> <tr> <td>배수</td> <td>2배수</td> <td>2배수</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서 및 우대요건평가, 채용사이트 통보 	구분	본부(원주)	강릉사업소	배수	2배수	2배수
구분	본부(원주)	강릉사업소						
배수	2배수	2배수						
면접전형	2024.1.26.(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 : 한국가스기술공사 강원지사 (강원시 원주시 단구로 423 단구동) ○ 직업기초능력 및 지무수행능력 평가 						
최종합격자 발표	2024.2.06.(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합격자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확인 						
임용일	2024.2.14.(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지 : 한국가스기술공사 강원지사 (강원시 원주시 단구로 423 단구동) : 한국가스기술공사 강릉사업소 (강원시 강릉시 동해대로3305번길 19(죽현동))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구비서류		제출시기
공통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원서접수 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	○ 주민등록초본(군경력 기재) 원본 1부	면접일 ※ 미제출시 면접응시불가
	○ 주민등록등본(생년월일만 표시) 원본 1부 - 공고일 이후 일자로 발급하여 제출 - 주민등록초본 발급 시 반드시 군경력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공고일 이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	
○ 자격증 사본 1부(우대사항 관련 자격증 포함)		
○ 취업지원(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자격증 등 제출서류는 발급기관에 진위 확인을 요청할 예정이며 입사지원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진위확인 및 인정기준

- 자격증(운전면허증 포함)
 - 진위확인 방법 : 자격증 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자격증 발급 기관에 확인
 - 인정기준 : 입사지원 마감일까지 취득하여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거주지 및 병역사항 확인)
 - 진위확인 방법 : 발급기관의 원본서류 제출 통해 진위 여부 확인
 - 인정기준 : 채용공고 게시전일 주민등록 등본상 지원사업장 소재지 거주 하여야 함
 - 발급일자 : 제출일 기준으로 발급일 90일 이내의 서류 제출
 - ※ 주민등록 초본상 군경력 기재 필수

6. 유의사항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은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면접일 서류 미제출 시 면접 응시가 불가하오니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 확인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는 조회에 필요한 개인 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인원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를 불성실하게 기재하거나(기재착오, 누락, 입력조건을 채우기 위한 글자의 반복 입력 등), 온라인 제출자료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응시원서의 성실 기재 및 합격자 발표일 등의 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합격 및 채용 취소
 - 최종합격자 결정 이후부터 임용 전 입사포기, 임용 후 1개월까지 해당 채용에서 퇴사자 발생, 취소,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당초 계획인원에 미달할 경우 예비합격자(채용 계획인원의 2배수)를 두어 결원을 충원할 수 있습니다.
 - ※ 단, 면접전형 과락자,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자, 미응시자는 예비순위 부여하지 않음
 - 채용비위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직원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기 위해 전형절차별 예비순위 해당자(채용계획인원의 2배수)를 확인하여 피해자 구제에 활용합니다.
 - 최종 합격자 결정 후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 및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 등 채용비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및 채용을 취소하며 취소일로부터 5년간 우리공사 입사를 제한합니다.(접수된 서류 미반환)
 - 최종합격자 결정 전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면접전형 참석자 전원에게 채용결격 사유 해당여부 확인서 징구합니다.(붙임문서 참조)
-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반환 등
 -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불합격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 반환할 예정입니다.
 - (반환청구방법) 본인이 신청한 「채용서류반환청구서」에 의함
 - (보관기간) 임용일로부터 90일까지
 - (개인정보보호) 보관기간 이후 반환하지 아니한 채용서류는 즉시 파기

- (반환방법) 채용서류의 반환은 본인 직접 수령 및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함
- (반환의무 예외)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및 회사에서 요구한 채용서류 외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반환하지 않음

□ 이의신청 접수 : 전형별 불합격자 이의신청 접수

- 방법 : 한국가스기술공사 강원지사 채용담당자에게 문의 및 접수 (mwchoi@kogas-tech.or.kr / 033-760-6813)
- 신청기한
 - 서류전형 불합격자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 익일까지
 - 면접전형 불합격자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까지
- 이의신청 처리대상 : 채용 관련 부정행위 및 불합격자 관련한 이의신청 사항
- 이의신청처리 예외사유 : 채용과 무관한 문의 및 평가자 개인정보 등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7. 참고자료

□ 인사규정 제5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공사에 제출한 채용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 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 범죄

2024. 1. 3.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